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126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17. 접수 제22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776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C은 원고에게 9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및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13. 2015.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22.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및 망인의 자녀들인 C, E, F은 2022. 2. 1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등

1)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C은 이 사건 약정금채무 외에도 G은행, H카드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2. 2. 11.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존재 및 C이 무자력 상태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0.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7762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소장부분을 수령하였고, 당시 C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명2385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결정문을 수령하였고, 당시 C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망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수 자금의 마련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전후의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 등 부부공동재산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2/9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건물 K동

[도로명주소] 서울 중랑구 L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5층 공동주택

1층 724.844㎡, 2층 542.454㎡, 3 내지 12층 각 711.852㎡, 13 내지 25층 각 650.2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중랑구 I 대 10,920.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M 철근콘크리트구조 84.5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0920.3분의 17.111. 끝.

